

○ 직업전환 평가 기준표

※ 기준표에 기재된 배점 가능한 최소 경력보다 낮은 경우 0점 처리

※ 총 합계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는 승인 불가

항목		검토기준		배점	
정량 평가	기준 소득별 지원 내규	기준 중위소득분위	·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	40	
			·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	25	
			· 기준 중위소득 100% 미만	10	
			· 기준 중위소득 100% 이상	5	
	경력별 지원 내규 (택 1)	무용수 활동 및 안무 활동 경력	· 전문무용수활동 및 안무경력 8년 이상	40	
			· 전문무용수활동 및 안무경력 6년 이상~8년 미만	30	
			· 전문무용수활동 및 안무경력 4년 이상~6년 미만	20	
			· 전문무용수활동 및 안무경력 2년 이상~4년 미만	15	
		무용 교육 활동 경력	· 무용교육활동경력 10년 이상	40	
			· 무용교육활동경력 8년 이상~10년 미만	30	
			· 무용교육활동경력 6년 이상~8년 미만	20	
			· 무용교육활동경력 4년 이상~6년 미만	15	
정성 평가	교육 계획	직업전환 교육 계획/ 적정성	· 신청 시기 및 내용이 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한가?	10	
			· 직업전환을 위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? (희망직업, 교육세부프로그램)	5	
	교육 계획	직업전환 의지 및 노력도		· 교육 수료 후 향후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? (향후계획, 실현가능성)	10
				· 직업전환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는가?	5

※ 자격 요건 및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산점

1급~3급 장애인 (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)	20	4급~6급 장애인 (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경증))	10
임신 또는 출산(입양), 육아 및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무용예술인	10	부상을 당한 무용예술인	10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	20	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	10

기준 중위소득분위(구간) 경계값 (*2025년 기준중위소득-2024.8.1.보건복지부 공표)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'기준 중위소득'

(단위 : 원)

가구원수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30%이하	717,604	1,179,797	1,507,606	1,829,332	2,132,458	2,419,442	2,696,528
50%이하	1,196,007	1,966,329	2,512,677	3,048,887	3,554,096	4,032,403	4,494,214
60%이하	1,435,208	2,359,595	3,015,212	3,658,664	4,264,915	4,838,883	5,393,057
80%이하	1,913,610	3,146,126	4,020,282	4,878,218	5,686,554	6,451,844	7,190,742
기준 중위소득(100%)	2,392,013	3,932,658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	8,988,428

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 시마다 923,623원씩 증가 (8인가구: 9,912,051원)